

# '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(안)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16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의안 번호	28A
----------	-----

## 1. 제안이유

- '93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,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였으나,
- 주요사업시행 변경과,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취득 및 교환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

### 가. 재산취득

- 농촌진흥원 저온저장고증축
  - 청주시 북대동 261-1번지 농촌진흥원내 조립식 판넬구조 1동 52.8 m<sup>2</sup>
- 농촌진흥원 옥천포도시험장 안내 및 경비실신축
  -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02-5번지 포도시험장내 세멘벽돌 스라브구조 1동 40.0 m<sup>2</sup>

### 다. 재산의 교환

#### ○ 교환 취득 (경찰청소관재산) : 내역별첨

- 청주시 북대동 629-15번지의외 24 필지 39,783 m<sup>2</sup>

#### ○ 교환 처분 (청주, 충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및 건물) : 내역별첨

(토지) \_\_\_\_\_ 18 필지 33,012 m<sup>2</sup>

[ 청원군 가덕면 시동리 206-20외 4 필지 24,514 m<sup>2</sup>

[ 충주시 가주동 1-7번지의외 12 필지 8,498 m<sup>2</sup>